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87회 임시회>**

2010. 4. 23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4월 1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군내 2개소 휴양림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소 내에 달성군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건설도시국 분장 사무 중 비슬산 및 화원 자연휴양림 삭제(안 제7조)
  -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소 내에 달성군 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설  
(안 제4장 제15조~제17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4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2개소 휴양림의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소 내에 달성군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으로 군내 휴양림이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 기존의 건설도시국 분장 사무 중 비슬산 및 화원 자연휴양림을 삭제하고 사업소 내에 달성군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그에 따른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서,
-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근거 규정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사업소와 출장소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생략)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4월 1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증원 가능 인력 중 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총 정원을 676명에서 677명으로 1명을 증원함 (안 제2조)
  - 1) 집행기관 : 665명 (총전 664명 : 증 1)
    - 일반직 1명 (5급 1)
  - 2) 의 회 : 12명 (변동없음)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 (안 제4조)
  - 1) 본 청 : 391명 ⇒ 382명 (감 9명)
    - 일반직 : 감 6 (6급△3, 7급△2, 9급△1)
    - 기능직 : 감 3 (8급△1, 9급△1, 10급△1)
  - 2) 의회사무과 : 12명 (변동없음)
  - 3) 직속기관 : 99명 (변동없음)
  - 4) 사 업 소 : 현재없음 ⇒ 10명 (증 10)

- 일반직 : 증 7 (5급+1, 6급+3, 7급+2, 9급+1)
  - 기능직 : 증 3 (8급+1, 9급+1, 10급+1)
- 5) 읍 : 78명, 면 96 (변동없음)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화원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휴양림 관리 사무소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관리는 물론, 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우리군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되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계비용이 62,962천원으로 재정부담 능력에 차질이 없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4월 1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과학경제진흥실장)
3. 개정이유

○ 현풍시장 등 관내 공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의 시장 운영 및 위탁관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상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조건 및 시설기준 신설(안 제4조)
- 다.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사용허가 규정(안 제5조)
- 라. 사용료 징수 규정 보완(안 제6조)  
※ 사용료 징수 및 납부 규정 변경 등
- 마. 사용료 감면 규정(안 제7조)
- 바. 사용 보증금 납부 및 반환 규정(안 제8조)
- 사.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규정(안 제13조)
- 아. 사용자에 의한 설비 손멸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근거 마련(안 제15조)
- 자. 공설시장 위탁관리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현풍 시장 등 공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의 시장 운영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기존의 “공설시장” 용어를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 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개설 및 사용허가” 규정을 구체화 하는 등 시장의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사용료 연 단위 징수 및 선납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사용료 체납을 예방하고, 사용료 징수·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4월 1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과학경제진흥실장)
3. 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장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입점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상인회의 등록

- 1)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수행자 요건으로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나. 인정시장의 등록

- 1) 인정시장의 시설과 부지에 대한 기준
- 2) 등록취소 및 관리와 책임에 대한 기준

##### 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 운영 명문화

- 1)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유물 관리 및 시장 영업권의 승계
- 2)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형 소매점의 증가로 이용 고객이 감소하는 등 상권이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에 시설물의 관리·운영 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고,
-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점 상인의 상권 보호에 기여하는 등,
-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4월 1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과학경제진흥실장)
3. 개정이유

○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강구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심의 사항 일부 삭제 및 신설(안 제2조)
  - 삭제 :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 신설 :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그 밖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나.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의 구성 중 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전문가도 포함
- 다. 실무위원회 삭제(안 제7조)
-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통합(안 제9조 및 11조)

##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능적으로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줄임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 물가대책위원회를 기존의 공무원 위주의 구성에서 실무 관계자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187회 임시회>**

2010. 4. 23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흠**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4월 1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장)
3. 제안이유

- 현풍곽씨십이정려각은 1963년 중건 당시에는 주위의 소례못과 뒤편 동산을 배경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정려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지금은 도로변에 위치, 소음·공해의 피해가 심하고 침하우려가 있으며, 전면 소공원 수목과 건물 등으로 경관이 불량하고 주변 개발로 문화재 훼손 소지가 많음.
- 본 정려각은 대구시 지정 문화재자료 제29호로서 주변에 대양정, 이양서원 등과 함께 관광객이 많아지고, 특히 전국 유림에서 총효의 현장 견학장으로 많이 찾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임.
- 그러나 주위에 주차장이 없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열악하며 녹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의 정려각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받는 현풍면 지리 1346번지 800m<sup>2</sup>에는 정려각을 이축, 현풍면 지리 1331-3번지 331m<sup>2</sup>에는 관리사 및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함.

#### 4. 주요내용

- 현풍곽씨십이정려각 및 관리사 이축부지

위 치	면적(m <sup>2</sup> )	공시지가(원/m <sup>2</sup> )	기준가격(천원) (공시지가×면적)	취득예정가격(천원)	비고
계	1,131		45,052	120,000	
현풍면 지리 1346	800	30,000	24,000	120,000	
현풍면 지리 1331-3	331	63,600	21,052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달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달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II. 검토의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변경안은 정려각을 이축하고 현재의 정려각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 현풍곽씨십이정려각은 대구시 지정 문화재자료 제29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구시티투어의 코스 중 일부로 포함 되어있어 이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므로 기부 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신축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 관 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  
 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  
 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  
 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  
 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  
 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  
 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생략

### 〈달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